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5.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년 6월 5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9년 6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9. 6.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김인문)

가. 제안이유

- 현 시대상황에 맞게 구민상의 시상부문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민상에 대한 구민의 공감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민상의 종류 정비(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 개인, 단체 부문 통합하여 부문별 2명(단체 포함)으로 시상
 - 사회질서확립상과 봉사상을 봉사상으로 통합, 모범청소년상 및 과학상 삭제, 문화상을 문화예술상으로 명칭 변경, 지역공헌상, 복지상 신설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및 단체 등에게 수여하는 영등포구 구민상 수여대상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는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총 10개 부문에서 9개 부문으로 조정하고, 개인 및 단체를 통합 시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구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상세한 심사기준을 규정함.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상 수상부문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구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수상심사기준을 보다 현실화, 세분화하여 영등포구 구민상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안 제3조제1항 중 “뚜렷한 공적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 한다.”는 구민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당연한 내용이므로, 조례안에 부언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함.

나. 수정내용

- 안 제3조제1항을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각 부문별 2명(단체 포함) 이내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5.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102호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2019. 6. 19.

제안자: 허홍석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 안 제3조제1항 중 “뚜렷한 공적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 한다.”는 구민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당연한 내용이므로, 조례안에 부언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함.

2. 수정내용

- 안 제3조제1항을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각 부문별 2명(단체 포함) 이내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을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각 부문별 2명(단체 포함) 이내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국민상 및 표창의 종류) ① <u>국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 교육상, 환경상은 개인 및 단체에 각각 시상할 수 있다.</u>	제3조(국민상 및 표창의 종류) ① <u>국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각 부문별 2명(단체 포함) 이내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뚜렷한 공적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 한다.</u>	제3조(국민상 및 표창의 종류) ① <u>국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각 부문별 2명(단체 포함) 이내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각 부문별 2명(단체 포함) 이내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장한어버이상
2. 효행상
3. 봉사상
4. 체육상
5. 문화예술상
6. 교육상
7. 환경상
8. 지역공헌상
9. 복지상

제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한어버이상”은 어진 어버이로서 어려운 환경에도 가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한 자
2. “효행상”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
3. “봉사상”은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공중질서에 특별히 헌신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지역과 구민을 위하여 봉사한 공적이 뚜렷한 자

4. “체육상”은 구민의 체력향상과 지역체육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
5. “문화예술상”은 지역 문화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자
6. “교육상”은 청소년 보호육성과 교육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
7. “환경상”은 자연보호, 재활용품활용, 쓰레기처리, 녹화사업 등 지역환경보호에 공로가 많은 자
8. “지역공헌상”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9. “복지상”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 등의 공로가 있거나 복지공동체 구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추천한다”를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상은 본인에게 주되 본인”을 “본인”으로, “주어야 한다”를 “수여한다”로 한다.

제21조 중 “전부 공표하거나 공개하지”를 “공표하지”로 한다.

제22조 중 “줄”을 “행할”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시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주어야”를 “시상하여야”로 한다.

제24조 중 “이상”을 “이상 훈격의”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 제목 중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민상 및 표창의 종류) ① <u>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사회질서확립상, 봉 사상, 체육상, 교육상, 환경상은 개인 및 단체에 각각 시상할 수 있다.</u>	제3조(구민상 및 표창의 종류) ① <u>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각 부문별 2명(단체 포함) 이내로 시상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u>
<u>1. 사회질서확립상</u>	<u><삭 제></u>
<u>2. ~ 4. (생 략)</u>	<u>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u>
<u>5. 모범청소년상</u>	<u><삭 제></u>
<u>6. (생 략)</u>	<u>4. (현행 제6호와 같음)</u>
<u>7. 문화상</u>	<u>5. 문화예술상</u>
<u>8. (생 략)</u>	<u>6. (현행 제8호와 같음)</u>
<u>9. 과학상</u>	<u><삭 제></u>
<u>10. (생 략)</u>	<u>7. (현행 제10호와 같음)</u>
<u><신 설></u>	<u>8. 지역공헌상</u>
<u><신 설></u>	<u>9. 복지상</u>
<u>② (생 략)</u>	<u>② (현행과 같음)</u>
제5조(심사기준) ① 구민상의 부 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5조(심사기준) ① ----- - ----- ----.
<u>1. “사회질서확립상”은 자기의 희 생을 무릅쓰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공중질서에 특별히 헌신한 공로가 있는 자</u>	<u><삭 제></u>

2. (생 략)

3. “효행상”은 어버이 공경하기를 하날같이 하여 구민의 본보기가 되는 자

4. “봉사상”은 지역 또는 구민을 위하여 봉사한 공적이 뚜렷한 자

5. “모범청소년상”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으로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로서 모범이 되는 자

6. (생 략)

7. “문화상”은 문학·미술·연예·교육·언론 등 지역문화사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많은 자

8. (생 략)

9. “과학상”은 과학산업에 이바지하거나 과학문화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

10. “환경상”은 자연보호, 환경보호, 재활용품활용, 쓰레기처리, 녹화사업 등 지역환경보호에 공로가 많은 자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효행상”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

3. “봉사상”은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공중질서에 특별히 헌신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지역과 구민을 위하여 봉사한 공적이 뚜렷한 자

<삭 제>

4. (현행 제6호와 같음)

5. “문화체육상”은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자

6. (현행 제8호와 같음)

<삭 제>

7. ----- 재활용품활용-----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제1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각 관계기관과 관계 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민 3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한다.

② · ③ (생 략)

제20조(수상순위) 이 상은 본인에게 주되 본인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수상자의 가족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게 주어야 한다.

1. ~ 3. (생 략)

제21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구청장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과 위원회 회의사항을 전 부 공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8. “지역공헌상”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9. “복지상”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 등의 공로가 있거나 복지공동체 구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

-----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수상순위) 본인-----

----- 수여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

--공표-----

다.	-----.
제22조(이중시상의 금지) 시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줄 수 없다.	제22조(이중시상의 금지) ----- ----- <u>행할</u> ---.
제23조(시상대장의 관리) ① <u>시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상대장에 등재한 후 주어야 한다.</u>	제23조(시상대장의 관리) ① <u>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u> ----- ----- <u>시상하여야</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02 호
----------	---------

제출연월일: 2019. 6.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현 시대상황에 맞게 구민상의 시상부문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민상에 대한 구민의 공감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상의 종류 정비(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 1) 개인, 단체 부문 통합하여 부문별 2명(단체 포함)으로 시상
- 2) 사회질서확립상과 봉사상을 봉사상으로 통합, 모범청소년상 및 과학상 삭제, 문화상을 문화예술상으로 명칭 변경, 지역공헌상, 복지상 신설

나. 그 밖에 오기, 용어 및 문장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9. 5. 16. ~ 5. 23. / 7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각 부문별 2명(단체 포함) 이내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뚜렷한 공적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 한다.

1. 장한어버이상
2. 효행상
3. 봉사상
4. 체육상
5. 문화예술상
6. 교육상
7. 환경상
8. 지역공헌상
9. 복지상

제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한어버이상”은 어진 어버이로서 어려운 환경에도 가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한 자
2. “효행상”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
3. “봉사상”은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공중 질서에 특별히 헌신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지역과 구민을 위하여 봉사한 공적이 뚜렷한 자

4. “체육상”은 구민의 체력향상과 지역체육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
5. “문화예술상”은 지역 문화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자
6. “교육상”은 청소년 보호육성과 교육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
7. “환경상”은 자연보호, 재활용품활용, 쓰레기처리, 녹화사업 등 지역환경보
호에 공로가 많은 자
8. “지역공헌상”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
로가 있는 자
9. “복지상”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 등의 공로가 있거나 복지공동체 구
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추천한다**”를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상은 본인에게 주되 본인**”을 “**본인**”으로, “**주어야 한다**”를 “**수여한다**”로 한다.

제21조 중 “**전부 공표하거나 공개하지**”를 “**공표하지**”로 한다.

제22조 중 “**줄**”을 “**행할**”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시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주어야**”를 “**시상하여야**”로 한다.

제24조 중 “**이상**”을 “**이상 훈격의**”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 제목 중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민상 및 표창의 종류) ①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 교육상, 환경상은 개인 및 단체에 각각 시상할 수 있다.	제3조(구민상 및 표창의 종류) ①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각 부문별 2명(단체 포함) 이내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뚜렷한 공적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1. 사회질서확립상	<삭 제>
2. ~ 4. (생 략)	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5. 모범청소년상	<삭 제>
6. (생 략)	4. (현행 제6호와 같음)
7. 문화상	5. 문화예술상
8. (생 략)	6. (현행 제8호와 같음)
9. 과학상	<삭 제>
10. (생 략)	7. (현행 제10호와 같음)
<신 설>	8. 지역공헌상
<신 설>	9. 복지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심사기준) ① 구민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5조(심사기준) ① ----- -----.
1. “사회질서확립상”은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공중질서에 특별히 헌신한 공로가 있는 자	<삭 제>

2. (생 략)

3. “효행상”은 어버이 공경하기를 하
늘같이 하여 구민의 본보기가 되는
자

4. “봉사상”은 지역 또는 구민을 위
하여 봉사한 공적이 뚜렷한 자

5. “모범청소년상”은 앞으로 우리 사
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으로서 건전
한 가치관과 생활로서 모범이 되는
자

6. (생 략)

7. “문화상”은 문학·미술·연예·교육·
언론 등 지역문화사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많은 자

8. (생 략)

9. “과학상”은 과학산업에 이바지하
거나 과학문화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

10. “환경상”은 자연보호, 환경보호,
재활용품활용, 쓰레기처리, 녹화사
업 등 지역환경보호에 공로가 많은
자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효행상”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착하
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
이 되는 자

3. “봉사상”은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
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
나 공중질서에 특별히 헌신한 공로
가 있는 자 또는 지역과 구민을 위
하여 봉사한 공적이 뚜렷한 자

<삭 제>

4. (현행 제6호와 같음)

5. “문화체육상”은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자

6. (현행 제8호와 같음)

<삭 제>

7. ----- 재활용품활
용-----

--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제1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각 관계기관과 관계 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민 3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한다.

② · ③ (생 략)

제20조(수상순위) 이 상은 본인에게 주되 본인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수상자의 가족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게 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21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구청장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과 위원회 회의사항을 전부 공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이중시상의 금지) 시상은 같은

8. “지역공헌상”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9. “복지상”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 등의 공로가 있거나 복지공동체 구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

-----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수상순위) 본인-----

----- 수여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

----- 공표-----.

제22조(이중시상의 금지) -----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줄 수 없다.

제23조(시장대장의 관리) 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장대장에
등재한 후 주어야 한다.

② (생 략)

제24조(준용) 구민에 대한 시장 이상
수상후보자 추천에는 이 조례를 준
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적 조 서(제17조 제3항 관련)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③ 군번 (군인의 경우)
④ 본적(국적)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등 급 (직급, 계급)
															⑩ 근무기간 (주공기간)
⑪ 공적요지(50자내외)															⑫ 공적분야 코드
⑬ 추천훈격															⑭ 추천순위
조 사 자															
⑮ 소 속															⑯ 직 위
⑰ 직 급															⑱ 성 명
⑲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 행할 -----
-.

제23조(시장대장의 관리) ① 별지 제2
호서식에 따라 -----
----- 시상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준용) ----- 이상
훈격의 -----
-----.

[별지 제1호서식]

공 적 조 서(제18조 제3항 관련)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③ 군번 (군인의 경우)
④ 본적(국적)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등 급 (직급, 계급)
															⑩ 근무기간 (주공기간)
⑪ 공적요지(50자내외)															⑫ 공적분야 코드
⑬ 추천훈격															⑭ 추천순위
조 사 자															
⑮ 소 속															⑯ 직 위
⑰ 직 급															⑱ 성 명
⑲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